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532-10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세청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머리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주시고,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행되는 해입니다.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종교인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홈택스에 「종교인소득 전용 신고화면」을 마련하여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은 한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홈택스 초기화면에 「모의계산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홈택스 신고요령을 자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신고서 작성사례, 주요문답(Q&A) 등을 함께 실었습니다.

아무썸록, 이 책자가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북이 되길 바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종교인소득 신고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4.

개인납세국장

최시호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종교관련종사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 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하는 성직자와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 성직자 : 목사, 신부, 승려, 교무, 그 외 성직자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 수녀 및 수사,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 포함

●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 본인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용(일직료, 여비, 종교 활동비*, 재해관련지급액),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관련 비용, 사택제공이익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종교활동비 :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종교인소득 신고방법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종교인에게 매월분 소득(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반기별납부 신청의 경우 연 2회의 신고·납부(7.10.과 1.10.)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1.~5.31.기간 동안 종교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 종교인소득 확정신고 대상

- ①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④ 종교인소득 이외 종합소득 확정신고 대상인 다른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①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종교인소득 소득유형 선택 가능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 비교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단의 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종교인소득 관련법령

구분	내용	법령
과세 대상	종교인소득의 범위 및 기타소득 과세 -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소법§21①26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 신고 허용	소법§21③
	종교단체의 범위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그 소속 단체를 포함)	소령§41⑭
	종교관련종사자의 범위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	소법§12 5호
	비과세 대상의 세부기준 - 학자금, 식사대, 실비변상적 비용(종교활동비 등), 자녀보육 수당, 사택 제공이익	아목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2천만이하 80%, 지급액 증가에 따라 비율 감소(~20%)	소령§87 3호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 예외 - 원천징수되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소법§73①,②
	종교단체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 -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소령§186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소령§202④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 다음연도 2월 소득 지급 시(미지급시 2월말)	소법§145의3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방법 - 필요경비 공제 후 소득·세액공제하여 소득세 산출	소령§202의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예외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종교인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소법§155의6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소법§164
기타	종교단체의 구분기장에 대한 규정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비과세 금품도 포함) 등과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소령§41⑮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 종교단체가 종교인회계와 종교단체 회계를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질문·조사하는 때에 종교 단체 회계에 대하여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음	소법§170 소령§222
서식 (14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21호),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23호 서식(6)),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25호의3) 등	소칙(별지서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구분	종류	서식	제출시기	비 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신청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월 31일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선택 가능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다음해 5월 말일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음해 5월 말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C O N T E N T S

제1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I. 과세 개요	3
	II.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8
	III.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13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I.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17
	II.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19
	III. 신고서 작성사례	28
	IV.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35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I. 계산구조	85
	II.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방법	88
	III. 신고서 작성사례	89
제4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I.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5
	II.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98
	III.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101
	IV. 퇴직소득 원천징수	104
제5장 근로·자녀장려금		109
제6장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 사례		117

제1장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1 종교관련종사자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구분	업무
• 종교관련종사자	종교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특정 종교의 가르침을 설교하고 전파
- 성직자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
- 기타 종교관련 종사원	성직자를 보조하고 제반 종교적 활동을 수행

■ 한국표준직업분류 중 종교관련종사자 ■

분류명			설명 ()직업 예시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종교 관련 종사자 (248)	성직자 (2481)	목사(24811)	기독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목사, 교목, 원목, 군목, 부목사)
		신부(24812)	천주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제, 주교, 신부, 부제)
		승려(24813)	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승려, 스님, 법사)
		교무(24814)	원불교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집행하고 관장하며 신자들에게 정신적, 도덕적 지도를 하는 사람으로 교리의 해설과 설교를 하며,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교무, 원불교)
		그 외 성직자 (2481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성직자가 여기에 분류(전교, 대종교, 유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2489)	수녀 및 수사 (24891)	천주교회에서 신부를 보조하여 미사 등의 집전을 보조하며, 신자들에게 신앙 및 정신적·도덕적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수녀, 수사)
		전도사 (24892)	교회에서 많은 역할에 따라 청소년이나 신자들의 교육을 담당하거나, 찬양 율동, 음악 등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전도사)
		그 외 종교관련 종사원 (24899)	상기 세세분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가 여기에 분류(포교사, 선교사)

출처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 : 8443/)

02

03

04

05

06

2 종교단체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로서 해당 종교 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

3 종교인소득

가. 과세대상 소득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함

- 정액 지급 또는 종교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공과금, 의료비, 보험료, 이사비 등)
- 지급항목의 명칭·형식 등에 불구하고 종교활동을 위한 지출인지 여부와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종교관련 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을 포함

나. 비과세 소득

종교인소득 중 다음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 법령에 비과세항목으로 열거되고 요건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1) 학자금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을 말함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
 - 「평생교육법」 제5장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자녀학자금은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교인 본인의 학자금과 달리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 교육비세액 공제 가능

2) 식사 또는 식사대

종교인이 받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 일직료·숙직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급여
-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종교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

과세 개요

- 종교활동비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

- 종교인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받는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 사택을 소유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4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 구분 기록·관리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종교단체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과세대상임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종교인 또는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원천징수)에 해당함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으로 구분
 - 종교인이 아닌 종사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등으로 구분
- *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종교인이나 종사직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원천징수)이 아님

3)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지출금액)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함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종교인소득)
-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근로소득 등)
- 위에 귀속되지 않는 비용 등(유지비용 등)

종교단체의 지출(소요 비용)	소득 귀속
①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중	
-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것	➡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으로 귀속
- 종교인에게 종교 활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종교활동비)	➡ 법령에 따라 지출한 경우 비과세
② 종사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	➡ 종사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귀속
③ 종교시설 유지 또는 증축비용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물보수비 등)	➡ 과세 대상 아님

1 신고대상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의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였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종교인소득 이외 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교인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타 소득(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소득

- 1)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받은 생활비, 상여금, 격려금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포함
- 2)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은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출산 및 보육관련비용, 사택제공이익으로 법령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됨

3 신고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일반적인 경우	1.1. ~ 12.31.	다음연도 5.1. ~ 5.31.
과세기간 중 사망(출국)시	1.1. ~ 사망(출국)일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연도 1.1. ~ 5.31.중 사망(출국)시	1.1. ~ 12.31. 다음연도1.1.~사망(출국)일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출국일 전날)까지

4 신고서(구분 작성)

1)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5))

원천징수 또는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1))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하려는 경우와 종교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5 납세지

소득세에서 납세지란 납세자가 소득세에 관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거나 정부가 결정·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관할 세무서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함

구분	납세지
종교인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주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6 소득 유형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③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한다.

7 신고서 제출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음

8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기재하여 5.1.~5.31. 기간 동안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종합소득세 전자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납부
지방소득세 전자납부	위택스(www.wetax.go.kr)

2)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환급금 계좌 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 중 체납된 국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충당한 후의 잔여금을 법정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이 신고서에 표기한 은행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환급통지서를 송부함

9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 1)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한 경우로서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10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불이익

- 1) 종교인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한 경우 40%)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

**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1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1) 수정신고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경정청구

당초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거나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기한후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퇴직소득세 확정신고

1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

-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2)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2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함

3 신고대상

- 1) 종교단체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한 경우로서 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4 신고기간

과세 기간	신고 기간
2018.1.1.~12.31.	2019.5.1.~5.31.

02

03

04

05

06

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퇴직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71조【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①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신고서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별지 제40호의2 서식)

제2장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1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비교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 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종교인이 받은금액	필요경비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2천만원 이하	80%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 초과액의 5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 초과액의 3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 초과액의 20%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 만원 초과액의 5%
	예) 수입금액 5,000만원인 경우 2,900만원 필요경비 인정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예) 총급여액 5,000만원인 경우 1,225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원)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공제(13만원, 특별소득·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미신청자)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01

0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03

04

05

06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과세체계

2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①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③ 소득금액(①-②)				
④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
		추가(경로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주택자금(300~1,800만원 한도)	×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장기펀드 저축액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개인연금저축		○	○	
⑤ 과세표준(③-④)				
⑥ (×) 세율(6~42%)				
⑦ 산출세액(⑤×⑥)				
⑧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 한도)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 한도)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 가능		○	○
	자녀(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60만원)		○	○
	연금계좌(12%, 400만원(퇴직연금 700 한도))		○	○
	특별	보험료(12%, 100만원 한도)	×	○
		의료비(15%, 700만원 한도)	×	○
		교육비(15%, 300만원(대학 900) 한도)	×	○
		기부금(금액별 100/110, 15%, 25%, 30%)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미신청자)		○ (7만원)	○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	○	
⑨ 결정세액(⑦-⑧)				

※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예상세액 비교기능 제공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단의 모의계산 → 근로·종교인소득 세액 비교)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1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종교인소득 수령액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연간 지급받는 소득																							
(-)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액	$(= \text{연간 종교인소득 수령액} - \text{비과세소득})$																							
(-) 필요 경비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	필요 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소득금액	$(= \text{연간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액} - \text{필요경비})$																						
(-) 인적 공제	<p>○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p> <p>•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18세 미만</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p>•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p>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p>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p>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구 분	계 산 방 법		
(-) 그 밖의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구 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16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 (100%, 70%(5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17년도에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 · '18년도 이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과세표준	=(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종합 한도초과액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구 분	계 산 방 법	
기본세율	〈참고〉 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로 신고 가능 	
	○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나라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합계가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5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세액공제 : 연 7만원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구 분	내 용																						
연간 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소득																						
(-)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보육수당 등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이 적용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근로소득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③-④)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p>□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 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 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18세 미만</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p>□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 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p>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부양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 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20세 이하 60세 이상	18세 미만	제한없음																	
	공제 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																						

구 분	내 용											
(-) 특별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보험료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연 3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종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금액(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이자상환액 전액</td> <td style="vertical-align: top;"> ※ 전체 (㉠+㉡+㉢) 한도액 ㉠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 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리금 상환액 × 40%</td> <td rowspan="2" style="vertical-align: top;"> 공제한도 : Min(㉠, ㉡) ① : ㉡+㉢ ② : 연300 만원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주택마련저축 납입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저축 납입액 × 40%</td> </tr> </tbody> </table>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 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 ㉡) ① : ㉡+㉢ ② : 연300 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 전체 (㉠+㉡+㉢) 한도액 ㉠ 이 2015.1.1. 이후 차입·상환 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 ㉡) ① : ㉡+㉢ ② : 연300 만원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 그 밖의 소득공제	<input type="checkbox"/>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 공제(연 72만원 한도)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사업)소득 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구 분	내 용								
(-) 그 밖의 소득공제	<p>□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공제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이후 출자·투자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출자금액의 10%(100%, 70%(50%), 30%)*</td> <td style="text-align: center;">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td> </tr> </tbody> </table> <p>* '16~'17년도에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15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30%</p> <p>'18년도 이후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30백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p>	구 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16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100%, 70%(5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구 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16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100%, 70%(50%),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p>□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액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40%, 도서·공연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에 따른 한도+도서·공연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 최대 600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총급여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천만원~1억2천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5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2천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억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p>□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p>□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31.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p>□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자 공제 배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p>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p>								
	<p>*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 조합출연금, 신용카드, 투자조합 등 출자(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p>								

구 분	내 용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기본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참고 간편법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100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방법

구 분	내 용	
	총 급 여 액	한 도 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①, ②)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66만원
	7,000만원 초과	Max(①, ②)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50만원
(-)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input type="checkbox"/>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생·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납입액(연 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 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세액공제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input type="checkbox"/>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는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된 자 : 공제대상 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구 분	내 용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포함),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합계가 2천만원 이하분 15%, 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법정기부금(5년), 지정기부금(5년)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연 13만원) • 정치자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표준세액공제 적용 가능 <p>〈조특법상 세액공제〉</p> <p><input type="checkbox"/>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1.1. ~ 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p><input type="checkbox"/> 월세액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 세액공제(총급여 5.5천만원(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이하인 경우 12%)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단일소득 - 종교인소득자용 신고서 작성사례

자료1 기본사항

성 명 : 박대한
 주 소 : 서울 성북구 종암로 ***
 소 속 : A교회

자료2 종교인소득금액 내역

지 급 처 : A교회
 지급내역 : A교회에서 종교인 박대한에게 종교활동과 관련한 2018년 귀속 과세대상 수당
 총 54,000,000원을 지급, 원천징수만 하고 연말정산을 미이행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세 106,840원, 지방소득세 10,680원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생년월일	소득금액	비 고
본인	73.1.3		
배우자	78.10.8	소득없음	
자녀1	06.9.1	소득없음	
모친	41.10.23	소득없음	

자료4 기타사항

- * 국민연금보험료 : 1,000,000원
- * 연금저축 납입액(2015년 가입) : 400,000원

1 신고서 선택 및 작성순서

- 종교인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교인소득만 있는 종교인은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5)]을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본사항 ⇒ ⑤ 종교인소득명세 ⇒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신고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① 기본사항 (신고서 제1쪽)

-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e-mail), ⑤ 주소지 전화번호,
- ⑥ 휴대전화번호를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 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에 표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⑤ 종교인소득명세서 작성 (신고서 제2쪽)

- ⑦③ 일련번호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⑦④ 종교단체명 :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명을 적습니다.

신고서 작성사례

- ㉔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소득의 지급자(종교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㉕ 총수입금액 :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받은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적습니다.
* 합계란의 총수입금액 : 54,000,000원

㉑ 종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1쪽~제2쪽)

- ㉑ 총수입금액 : ㉕종교인소득 명세의 ㉕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㉒ 필요경비 : 아래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30,200,000원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실제 든 필요경비가 상기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 ㉓ 종합소득금액 : ㉑총수입금액란에서 ㉒필요경비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㉔ 소득공제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대상자 명세, ㉓~㉔)의 인적공제, ㉔~㉕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에서 ㉕의 금액을 차감한 8,000,000원을 적습니다.
- ㉖~㉗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㉖ 본인 : 1,500,000원
- ㉗ 배우자 : 1,500,000원

- ③7 부양가족 : 3,000,000원(2명)
- ③8~④1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 ③8 경로우대자 : 1,000,000원
- ④3 연금보험료 공제 : 1,000,000원
*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7 과세표준 : 15,800,000원(③3 - ③4)
- ④8 세율 : 15%
- ④9 산출세액 : 1,290,000원
* $15,800,000원 \times 15\% - 1,080,000원$
- ⑤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서(⑤1~⑤7)의 합계금액 280,000원을 적습니다.
- ⑤1~⑤7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 ⑤1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 ⑤2 연금계좌 세액공제 : 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 400,000원
연금계좌의 연금저축납입액 400,000원을 공제대상 금액에 적고 공제율 15%를 적용한 6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적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times 15%
- ⑤4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 제외)에 대해서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합니다.
- ⑤8 결정세액 : 1,010,000원(④9 - ⑤0)
- ⑥3 총결정세액 : 1,010,000원(⑤8 + ⑤9)
- ⑥4 원천징수세액 : 106,840원
* ⑤ 종교인소득명세의 ⑦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⑥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903,160원 납부(⑥3 - ⑥4)

④ 지방소득세액의 계산(신고서 제2쪽)

⑥⑥ 과세표준 : 15,800,000원(④⑦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옮겨 적습니다.)

⑥⑦ 세율 : 1.5%

⑥⑧ 산출세액 : 129,000원

* $15,800,000\text{원} \times 1.5\% - 108,000\text{원}$

⑥⑨ 세액공제 · 감면 : 28,000원(⑤⑩ $\times 10\%$)

⑦① 기납부한 특별징수세액 : 10,684원(⑥④ $\times 10\%$)

⑦②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90,316원 납부(⑥⑧-⑥⑨+⑦①-⑦①)

관리번호	-
------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지() 비거주지2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9
거주지	거주지국코드

1 기본사항	① 성 명 박 대 한	② 주민등록번호730103-1*****
	③ 주 소 서울 성북구 종암로 ***	④ 전자우편주소 korea****@****.com
	⑤ 주소지 전화번호 02-****-****	⑥ 휴대전화번호 010-****-****
7 신고구분	110 정기신고 20 수정신고 40 기한 후 신고	
2 환급금 계좌신고	8 금융기관/채신관서명	9 계좌번호

4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31 총수입금액: 5 종교인소득 명세의 10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54,000,000
32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용합니다.			30,200,000
33 종합소득금액: 31 - 32			23,800,000
34 소득공제: 35~45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8,00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성	내	외	주	구	인	금						
	공	정	명	외	국	민	분	원	액						
	도	성		국	인	등									
	지	명		인	코	로									
	도			코	드	번									
	구			호		호									
	0	박	대	1	730103-1*****		기본	35	본	인	1	1,500,000			
	1	이	현	1	411023-2*****		공제	36	배	우	자	1	1,500,000		
	3	김	하	1	780108-2*****			37	부	양	가	족	2	3,000,000	
	4	박	성	1	060901-4*****		추가	38	경	로	우	대	자	1	1,000,000
							공제	39	장	애	인				
								40	부	녀	자				
								41	한	부	모	가	족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4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1,000,000		
	44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용합니다.														
	47 과세표준: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로 합니다)												15,800,000		
	48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15%		
	49 산출세액: 47 × 48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1,290,000		
	50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51~57)의 합계금액을 적용합니다.												280,000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1명	150,000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금액	400,000		60,000

신고서 작성사례

						(4쪽 중 제2쪽)
구 분					금 액	
세액 공제 명세	㉓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㉔ 표준세액공제: 7만원					70,000
	㉕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㉖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㉗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㉘ 결정세액: ㉔-㉕("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010,000
㉙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㉑-㉒)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㉑ 무 신고	부 정 무 신고	무 신고 납부 세액		40/100	
		일 반 무 신고	무 신고 납부 세액		20/100	
	㉒ 과 소 신고	부 정 과 소 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㉓ 납부(환급)불성실	미 납 일 수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㉔ 총결정세액: ㉓+㉕						1,010,000
기납부 세액	㉖ 원천징수세액: ㉗ 종교인소득 명세의 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06,840
㉙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㉔-㉖						903,160
㉑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㉑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의 ㉒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5,800,000
㉒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㉓ 산출세액: ㉑ × ㉒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129,000
㉔ 세액공제·감면: ㉑ × 10%						28,000
㉕ 가산세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㉖ 기 납부한 특별징수세액: ㉑ × 10%						10,684
㉗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㉓-㉔+㉕-㉖						90,316
㉘ 종교인소득 명세						
㉘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㉙ 총수입금액	㉚ 원천징수세액	
	㉛ 종교단체명	㉜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A교회	101-**-*****	54,000,000	106,840	
	2					
3						
<p>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지방세법」 제95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하고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 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p>						
2019년 5월 31일			신고인	박 대 한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p>1. 장애인증서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영서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분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 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p>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1) 로그인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로그인 후 초기화면의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홈택스에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 신고 및 세무서 방문의 불편을 인터넷으로 대신하여 더욱 쉽고 빠른 업무처리를 제공합니다.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지방소득세 납부
- 인지에 전자문서 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신고부속서류제출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납부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365일 07:00 ~ 23:30

세금신고

- 부가기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 **클릭!**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인자세
- 교통여거지연경세
- 증권거래세
- 주세
- 과거신고내역(15.2.22 이전)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 02 세금신고 진행
-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파일생성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정(형식 · 내용검증) 후 제출
- 접수증 확인 · 출력
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신고내역)에서 접수증 확인 · 출력

세금 납부 이용절차

- 01 세금납부 대상선택
- 02 세금납부 진행
- 03 세금납부 확인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동)계좌 개설
-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 농어업용기자재취급신청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세금신고 목록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기본사항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작성방법
요약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

신고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신고 연내유형이 F,G,H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2)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접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

경정청구작성

4)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클릭! →

정기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5)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
작성

중간예납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6)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예정신고
작성

-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01. 기본사항

02. 종교인소득신고서

03. 신고서제출

미리보기

기본정보 입력

기본사항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귀속년도	2018	주민등록번호	800101 - ●●●●	조회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전자메일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직접입력		
주소지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휴대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거주구분	거주자 <input type="text"/>	내·외국인	내국인 <input type="text"/>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text"/>

① 클릭!

② 클릭!

-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입력됩니다.
 -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하단에 종교단체에서 제출된 지급명세서목록이 보여집니다.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합니다.
 - 조회된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01. 기본사항

02. 종교인소득신고서

03. 신고서제출

개***님 | 800101-*****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입력내용 저장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

클릭!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금액
(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0 원
(32) 필요경비 :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33) 종합소득금액 : (31) - (32)	0 원
(34) 소득공제 : ((35) ~ (45))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500,000 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개***	1	800101-*****

-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소득명세를 입력하기 위해 **【종교인소득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종교인소득명세 X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이상 입력 불가함)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클릭!** →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 □	□	확인
수입금액	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0	(77) 필요경비	0	(78) 소득금액	0
------------	---	-----------	---	-----------	---

닫기
적용하기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화면 우측 상단의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소득명세 불러오기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s://dev-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m/a/a/a/UTERNAAD87.xml&popupID=UTERNAAD87&w2xHome=/L

연말정산지급명세 및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 아래 화면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자료제출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누락자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득내용 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종교단체명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 불러오기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종교단체명	총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checkbox"/>	구주*****	215-81-73781	10,000,000	2,000,000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직접 입력하기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선택칸에 체크하신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명세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이상 입력 불가함)

·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연말정산/기타소득명세 불러오기 초기화

종교단체명	<input type="text"/>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확인"/>	
수입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원천징수세액	<input type="text" value="0"/>

①클릭! ←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76) 총수입금액	0	(77) 필요경비	0	(78) 소득금액	0
------------	---	-----------	---	-----------	---

닫기 적용하기 ← ②클릭!

- 다시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된 경우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만 클릭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상단의 종교인소득명세자료를 직접 입력 후 **【등록하기】** 및 **【적용하기】**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개***	1	800101-*****

클릭!

▶ 인적공제 금액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5) 본인	1,500,000 원	(39) 장애인	0 명 0 원
(36) 배우자	0 원	(40) 부녀자	0 원
(37) 부양가족	0 명 0 원	(41) 한부모가족	0 원
(38) 경로우대자	0 명 0 원	인적공제 계(35~41)	1,500,000 원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0 원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계산하기** **도움말**

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0 원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500,000 원

(48) 세율

6.00 %

(49) 산출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30,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90,000 원

- 인적공제대상자가 있는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 - Windows Internet Explorer

https://dev-teht.hometax.go.kr/websquare/popup.html?w2xPath=/ui/m/a/a/a/a/UTERNAAD89.xml&popupID=UTERNAAD89&w2xHome=/ui/m/z/8&w2xDocu

인적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해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①클릭!**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800101-*****	개***	소득자 본인	Y	N	N			내국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0명	8. 인적공제 계	1,500,000

닫기 **입력완료** ← **②클릭!**

- 화면 상단의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대상자를 입력한 후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직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이내로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4)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계산하기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원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47) 과세표준: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0"/>	원
(48) 세율	<input type="text" value="6.00"/>	%
(49) 산출세액: (47) x (48) - 누진공제액	<input type="text" value="0"/>	원
(50)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input type="text" value="70,000"/>	원

- 납입금액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에 입력하고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은 개인연금저축공제 항목에 입력합니다.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금액이 있을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세액공제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세액공제명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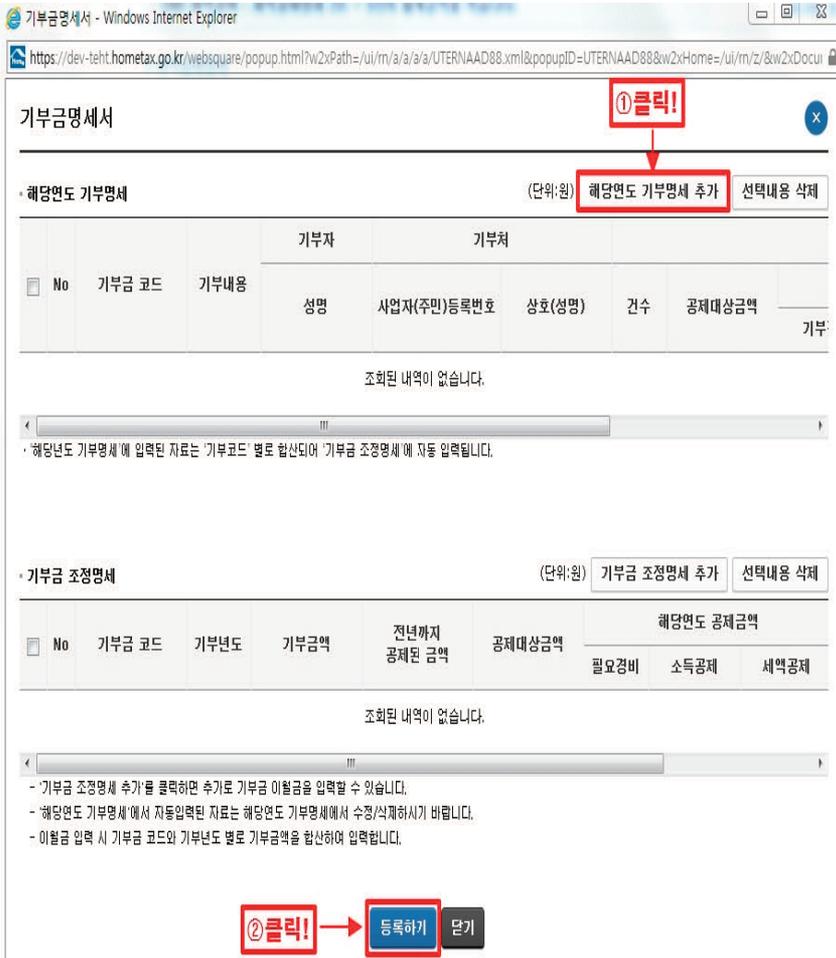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text" value="0"/>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value="0"/>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도움말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0"/>	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 자녀세액공제 항목에 기본공제 자녀 및 출산·입양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항목을 각각 입력합니다.
-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금액란에 입력합니다.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명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도움말	<input type="text" value="0"/> 명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input type="text"/>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input type="button" value="클릭!"/>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input type="text" value="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용합니다.				0 원

- 기부금세액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우측 상단의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도움말	0 원	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도움말	법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 표준세액공제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IV

02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움알버튼을 클릭하세요.

도움말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95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①클릭! →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① 환급금 계좌신고

- 본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CMA등 가상계좌 및 외국계 은행계좌 등으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 소득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 검토후 6월말~7월초경 신고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환급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금 수령을 위한 금융기관정보 입력 시 농협은행과 지역농축협 은행의 구분을 정확하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선택-
계좌번호	<input type="text"/>

※ 홈택스 전자신고 시, 신고서에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조회 자료는 신고권의를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자료는 납세자가 직접 확인 후 수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 **②클릭!**

-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신 후 상단의「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01. 기본사항

02. 종교인소득신고서

03. 신고서제출

개*** 님 | 800101-*****

저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개*** (800101-*****)		
귀속년도	2018		
신고유형	정기신고(40.비사업자)		
종합소득금액	2,000,000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500,000	500,000	0
산출세액	30,000	3,00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2,000,000	-200,00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2,000,000	-200,000	0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클릭!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01. 기본사항

계***님 | 800101-*****

제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2. 종교인소득신고서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03.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xmts_user111	사용자명	개인사업자	
접수번호	101-2019-2-600000504367	접수일시	2019-04-08 18:43:10	접수결과 정상

· 제출내역

상호(성명)	개인사업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800101-*****	
신고서종류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0종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 상세내역 (단위 : 원)

	2,000,000
	0
	0
	0
	0
	0

클릭!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기본사항 계***님 | 800101-***** 저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2. 종합소득세신고서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03.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과세연월	2018년1월	농어촌특별세 납부(환급)할세액	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00,000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2,000,000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지방소득세 납부(환급)할세액	-200,00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2,000,000		0

※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경가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를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 **체크!** →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 신고내역】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④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19-04-08 ~ 2019-04-08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 **클릭!**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건 ▼ 확인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성명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ID	부속서류 제출여부
2018..	종합소..	정..	정..	개인..	800101-+...	인터넷..	2019-04...	101-201...	정상(0쪽)	보기	보기	xnls_u...	N

1 총 1건(1/1)

클릭!

- 화면 상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납부서 항목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종교인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1) 로그인

복수소득 - 종교인소득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강연료 수입 등)이 있는 신고대상자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초기화면의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365일 07:00 ~ 23:30
---	---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 02 세금신고 진행
-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종합소득세 ← 클릭!**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인지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증권거래세
- 주세
- 과세신고내역(15.2.22 이전)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공익법인 보고서제출
- 농어업용기자재환급신청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세금신고 목록의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2) 기본사항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작성방법
요약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
매뉴얼)신고도움
서비스

금융소득

주요
변경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1 단월소득-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 신고 인내유형이 F,G,H인 경우

정기신고
작성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2 일반신고서

* 사업소득(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클릭!**정기신고
작성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3 근로소득자 신고서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

경정청구작성

4 종교인소득자 신고서

*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고
작성기한후신고
작성

수정신고작성

경정청구작성

5 중간예납신고

중간예납
작성중간예납
파일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 등)

6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

예정신고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중앙에 일반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메뉴펼침 메뉴접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한***님 | 300118-*****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화면도움말

마리보기

0 기본정보(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새로작성하기 신고서불러오기 신고도움 서비스

종합소득세는 왼쪽 메뉴를 순차로 입력하면서 중간 계산을 거쳐 10.세액계산에서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산출됩니다.
 ※ 일부 값만 수정한 경우에도 이후 화면을 반드시 경우(등록하기 또는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종류 또는 신고유형을 변경할 경우, '새로작성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팝업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고인 기본사항

개인 단체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단체(중중) 개인 또는 단체(중중) 대하여 신고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귀속 년도	2018	납세자 번호	300118 - ●●●●●● 조회 성명 한***
주소	도로명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22길 4-9 지번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27가 280-271 일교교기만 나눔 506호		
주소지 전화	- - -	사업장 전화	- - - 휴대 전화 -선택- - - -
전자 메일	@	직접입력	
내 외국인	내국인	거주 구분	거주자 거주 지국 KR 대한민국 조회
신고 유형	-선택-	가장 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 구분 정기(확정) 조회
장예인 여부	<input checked=""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부 ※ 비장예인이 "예"로 선택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조회】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가장의무 란에는 신고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화면 하단의 소득종류 선택란에「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기타소득」을 체크합니다.

④ 사업소득 기본사항

- 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가능한 업종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 ※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건 조회됨).
- ※ 940906, 940907, 940908 업종은 업종코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후 기준경비율 등 다르게 입력이 가능함 (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신고유형이 다른 2건 이상이 조회됨)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없음	-	조회	상호
업종코드	940909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소득구분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1) <input checked=""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1) <input type="radio"/>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업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종목	인적용역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신고유형	단순경비율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소재지	국내	소재지국	KR	대한민국 조회
공동사업자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여" 선택 후 대표자를 입력하세요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등록하기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없음으로 하고 업종코드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를 입력합니다.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업태와 종목을 확인합니다.
- 기장의무란에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 란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④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종코드	신고유형
<input type="checkbox"/>	40			940909	32

⑤ 사업소득 기본사항

■ 업종코드 입력 시 인적용역사업자(94로 시작하는 업종코드) 등은 사업자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가능한 업종코드)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업종코드를 확인 후 입력하세요.
 ※ 신고유형이 단순경비율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둘 다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2번 입력하시면 됩니다.(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2건 조회됨).
 ※ 940906, 940907, 940908 업종은 업종코드 입력하고 신고유형에 단순경비율 입력하여 등록하기 누르고 나서, 다시 동일한 내용을 입력 후 기준경비율 등 다르게 입력이 가능함(아래의 사업장 명세에 동일한 업종코드로 신고유형이 다른 2건 이상이 조회됨)

사업자 등록번호	있음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상호
업종코드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소득구분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0)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31) <input type="radio"/>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0) <input type="radio"/>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41) <input type="radio"/>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32)
업태	종목
기장업무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신고유형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소재지	국내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소재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공동사업자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비과세농가 부업소득 여부 ※ "여" 선택 후 대표자를 입력하세요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⑥ 세부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	전화번호
대리구분	-선택-	관리번호	조정번호

←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에 입력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 화면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소득금액 명세서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매뉴얼침 매뉴얼기 한*** 님 | 300118-***** 제출여부 >>> 재제출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장 정보** **클릭!** →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사업소득명세서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순경비율 소득금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40	단순경비율	000-00-00000	940909		0	0

※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합계 (단위: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합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합계	전체 합계
0	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 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총수입금액을 입력할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 화면 상단에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 총수입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필요경비가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 화면 중앙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사업장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클림 메뉴펼기 한***님 | 300118-***** 저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화면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사업장 정보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코드	상호	수입금액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단순경비율	000-00-00000	940909		5,000,000	1,795,000

※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 **합계** (단위: 원)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합계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합계	전체 합계
0	1,795,000	1,795,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입력이 완료되었으므로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02. 소득금액명세서

- 사업소득명세서
- 단순경비율 소득금 액명세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근로,기타,연금소득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 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 산서

07. 세액공제,감면,준비: 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사업소득명세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소득(31, 41)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선택한 후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별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입력하여 합니다.

동업기업 배분받은 소득 입력

선택	소득 구분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주업종 코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공동 농가 사업 여부
<input type="checkbox"/>	40	000-00-00000		940909	02	32	5,000,000	3,205,000	1,795,000	부 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p>·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p>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p>	<p>상호</p>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p>·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p>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원	<p>·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농어촌특별세</p> <input style="width: 100%;" type="text"/> 원
---	---	---	--

등록하기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선택내용 삭제

선택내용 수정

NO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입력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력 후 등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타(종교인)소득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클림 메뉴접기 한***님 | 300118-***** |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역산서 | 07. 세액공제, 감면, 공비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02. 소득금액명세서

사업소득명세서
 단순경비율 소득금 역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근로·기타·연금소득

02.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공적 연금소득은 5개 사업자등록번호(219-82-01593 국민연금공단, 106-83-03829 국군계장관리단, 220-82-00895 공무원연금공단, 110-82-05569 행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6-82-0144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소득구분	종교인소득 67		상호(성명)	구주이광범보 (무)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5-81-73781 확인	번호(성명)	구주이광범보 (무)
①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20,000,000		②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16,000,000
소득금액(① - ②)	4,000,000		도움말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0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0

등록하기 ← ①클릭!

소득의 지급자		①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②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① - ②)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67 215-81-73781	구주이광범보 (무)	20,000,000 16,000,000	4,000,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②클릭!

- 지급명세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으면 우측 상단의 【근로/연금/기타(종교인)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소득구분에 【종교인소득67】을 선택하신 후 소득의 지급자 및 총수입금액을 입력합니다.
- 화면 중앙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수록되며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QUICK
로그아웃
연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금지급내역
브라우저 환경설정
접기 >

메뉴관리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한***님 300118-****

저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10. 세액계산 단계까지 진행 후 다시 본 화면에서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하게 되면 종합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됨에 따라 산출세액이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계산되게 됩니다.(산출세액도 계산됨)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통해 계산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세액계산에 적용되어야 하니 04. 소득공제명세서부터 10. 세액계산까지 모든 화면을 차례로 경유해서 [저장후 다음이동]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결손금 ·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분	1. 소득별 소득금액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5.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1-2-3-4)
		2.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포함) 결손금공제금액	3.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4.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이자소득금액	0				0
배당소득금액	0				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0	0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제외)	0				0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 (주택임대업포함)	1,795,000				1,795,000
근로소득금액	0				0
연금소득금액	0				0
기타소득금액	4,000,000				4,000,000
합계 (종합소득금액)	5,795,000	0	0	0	5,795,000

※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월결손금 명세서]를 입력하세요.

- 이번 사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제 내역 중 기본 인적공제자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관리 메뉴경기 한*** 님 | 300118-***** 제출여부 >>> 제출중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도움말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소득공제명세서 화면도움말

소득공제(소득세법) 도움말

> **기본공제자 입력!** 근로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사업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주민등록번호 - **확인!** 성명 내국인

기본공제 해당자 미해당자 **클릭!** 관계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항목 70세 이상 부녀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 2016년귀속 부터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화면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클릭!**

> **기본공제자 명세**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input type="checkbox"/>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
<input type="checkbox"/>	1	300118-2*****	한***	소득자 본인	Y	Y	N	N	

> **인적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0명
2. 배우자	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0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1명	8. 인적공제 계	2,500,000

- 종교인소득에 대해 이미 연말정산을 한 경우 우측 상단의 【종교인소득(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후 관계, 인적공제항목에 각각 입력합니다.
- 화면 중앙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기본공제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1. 국민연금보험료 도움말	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계산하기	0
12. 기타연금보험료 도움말	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도움말	0	17. 특별공제 계(16)	0
14. 특별공제_보험료 계산하기	0		

▶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25. 고용유지증소기업	0
20.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 도움말	0	26. 고용유지증소기업의 근로자 도움말	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도움말 계산하기	0	27.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0
22. 신용카드 등 계산하기	0	28. 계(18+ ~ +27)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도움말	0		

▶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초과액

29. 소득공제 합계(0+11+12+13+17+28)	0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15+19+23+27-2,500만원) 도움말	0
-------------------------------	---	---	---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면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며,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각각 입력합니다.
-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매뉴얼 보기 매뉴얼 보기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화면도움말 도움말

02. 소득금액명세서 선택내용 입력/수정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입력대상 선택내용 입력/수정

공제구분	주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업종코드
<input type="checkbox"/> 세액(소득) 필요경비	300118-*****	한***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 300118-***** 성명: 한***

* 유형코드: 종교단체지정기부금 41

기부내용: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선택 기부자 성명: 기부자 관계: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 - 확인 기부처 상호:

*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합계금액:

* 공제대상 기부금액: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기부금:

등록하기 ← 클릭!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건수
<input type="checkbox"/>							

주의! 내역이 연속입니다

- 유형코드를 선택 후 기부내용을 입력합니다.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합니다.
-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내역 건수, 기부내역 금액을 입력합니다.
- 하단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세액공제 · 감면 · 준비금

세액감면(면제)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뉴얼링 매뉴얼기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납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기 산서
-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한*** 남 | 300118-***** 미리보기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

● 금액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5,795,000

● 사업장 정보 선택내용 입력/수정 선택내용 삭제

☐	소득구분	신고유형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금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40	32	000-00-00000		1,795,000

● 세액감면(면제) 신청서(000-00-00000) (단위: 원)

☐	구분	세액감면율	대상세액	감면세액	한도종속감면세액
<input type="checkbox"/>	(101)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2)중소기업예대한특별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3)연구개발특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5)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6)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08)지방민중소기업종합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0)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4)사회적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5)장애인표준사업장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6)소형주력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7)신형개발소득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8)핵심기술기업의국내복귀에대한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19)채주실단지외특정주주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0)채주투자권유주주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1)채주투자권유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2)기업도시입주기업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세액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4)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권유지구입주기업세액...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5)금융중심지창업기업에대한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6)첨단의료복합단지입주의료기업에대한소득세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8)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공...	0	0	0	0
<input type="checkbox"/>	(129)창업면서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30)기술이전에 대한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31)기술대여에 대한 감면	0	0	0	0
<input type="checkbox"/>	(132)기타	0	0	0	0
<input type="checkbox"/>	(133)세액감면 합계	0	0	0	0

· 103, 119~126 ※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는 103, 119~126을 모두 합하여 1건으로 입력함 작성하기

· 130, 131 ※ 해당 세액감면은 기술이전·대여에 대한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 작성하기

등록하기 ← ①클릭!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②클릭!

- 감면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등록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인적공제(부양가족) 대상자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 세액공제신청서
 - ☐ 세액감면, 공제, 준비금 열세서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 세액공제 신청서(000-00-00000) (단위:원)

구분	공제액	대상세액	공제세액
중소기업 통합 승계공제	0	0	0
법인전환 승계공제	0	0	0
신상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0	0	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신상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확정한세액공제대상)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정한세액공제대상)	0	0	0
신상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세액공제(확정한세액공제외)	0	0	0
일반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확정한세액공제외)	0	0	0
고용률증대 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	0	0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0	0	0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0	0	0
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0	0	0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0	0	0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세액공제	0	0	0
기업의어음채도개선험위안세액공제	0	0	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00	20,000	20,000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0	0	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	0	0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 투자세액공제	0	0	0
제 3 자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	0	0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	0	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0	0	0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	0	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우리스마트를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	0	0	0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근로소득증대 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급에 대한 과세특례	0	0	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	0	0
세액공제 합계	0	20,000	20,000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해당 세액공제는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 작성하기
 - 투자자산명세서 ※ 해당 세액공제는 투자자산 명세서 작성을 해야함 도움말 작성하기

등록하기 ← ①클릭!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②클릭!

- 세액공제 항목의 내역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만원입니다.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메뉴펼침 메뉴접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감면·준비금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세액공제신청서

+ 세액감면·공제·준비금 명세서

08. 가산세명세서

09. 가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한*** 님 | 300118-***** 미리보기

3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명세서

3 세액감면(면제) 명세서 도움말 (단위: 원)

구분	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조세조약(외어민교사)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외국인 기술자 세액감면	<input type="text"/>	
정부가 협약에 의한 외국인 급여에 대한 세액감면	<input type="text"/>	
합계	0	

3 세액공제명세서 (단위: 원)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큰 금액만 공제되며, 입력한 특별세액공제가 작아도 화면에 남아 있습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도움말	0명		0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명		
연금계좌세액공제 자동계산	0		0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전자신고 이월 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도움말	0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도움말	0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 90,000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액공제 합계는 세액공제 항목별 합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와 할세액공제 합계액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2.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Max(보장성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합계액은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환원장부 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준비금명세서

조세특례제한법조문(제목)	선택		
준비금손금산입액 연도		준비금손금산입액 금액	
준비금 환입액 당기환입액		준비금 환입액 환입액 누계	
사업자등록번호	선택	상호	

등록하기

①클릭!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코드	준비금				사업자등록번호
		손금산입 연도	손금산입 금액	당기환입액	환입액 누계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②클릭!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화면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가산세명세서

가산세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뉴얼 보기 매뉴얼 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한*** 님 | 300118-*****

미리보기

가산세명세서

① 금액 (단위: 원)

종합소득금액	5,795,000
--------	-----------

② 사업장 정보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수입금액
000-00-00000		5,000,000

③ 무신고 가산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무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20/100	0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0	7/10,000	

④ 과소신고 가산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40/100 (60/100)	0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0	14/10,0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10/100	0
부당감면·공제	공제세액	0	40/100	0

• 이번 사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단에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8) 기납부세액 명세서

기납부세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메뉴결림 메뉴결기 한***님 | 300110-*****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02. 소득금액명세서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04. 소득공제명세서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08. 가산세명세서

09. 기납부세액명세서

10. 세액계산

11. 신고서제출

기납부세액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의 근로소득(9)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 징수세액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결정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은 이 화면에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2-가-5.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2-나. 근로·기타·연금소득명세서, 2-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메뉴의 원천징수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기납부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중간에납세액	0	
토지등 배배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	
토지등 배배차익 예정고지세액	0	
수시부과세액	0	0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0	
합계	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중간에납세액이 있을 시 자동으로 나타나며, 확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9) 세액계산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매뉴얼

매뉴얼기

한***님 | 300118-*****
미리보기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공제 감면 준비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 **세액계산**

● **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과 부동산매입의 세율은 0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화면도움말

주식배우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명세서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종합소득금액	21	5,795,000	
소득공제	22	2,500,000	
과세표준(21-22)	23	3,295,000	41
세율(%)	24	6.00	42
산출세액	25	197,700	43
세액감면	26	0	44
세액공제	27	90,000	45
결정세액(25-26-27)	28	107,700	46
가산세	29	0	47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0	48
합계(28+29+30)	31	107,700	49
기납부세액	32	0	50
납부(환급)할 총세액(31-32)	33	107,700	51
납부특례세액차감	34	0	
납부특례세액가산	35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36	0	70

● **신고기간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107,700
지방소득세(51)	10,770
농어촌특별세(61-70)	0

- 기본적인 세액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76 ▶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 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 7조, 「지방세법」 제 96조 및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 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화면 아래에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신고서제출

메뉴펼침 메뉴접기

-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 02. 소득금액명세서
- 03. 종합소득금액 및 결구금
- 04. 소득공제명세서
- 05. 기부금 및 조정명세서
- 06.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서
- 07. 세액공제·감면·준비
- 08. 가산세명세서
- 09. 기납부세액명세서
- 10. 세액계산
- 11. 신고서제출

한*** 님 | 300116-*****

미리보기

신고서 제출 화면도움말

신고서내용 요약

소득자	한*** (300116-*****)		
귀속연도	2018		
신고유형	정기신고(30.단순경비율)		
종합소득금액	5,795,000		
구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3,295,000	3,295,000	0
산출세액	197,700	19,770	0
납부(환급)할 총 세액	107,700	10,770	0
납부특례세액차감	0		
납부특례세액가산	0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0		0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	107,700	10,770	0

환급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	------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하순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클릭!

- 오류검사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클림 메뉴접기 한***님 300118-***** 저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신고서 제출

02. 소득금액

03. 종합소득금

04. 소득공제

05. 기부금

06. 종합소득산세

07. 세액공제

08. 가산세명

09. 기납부세

10. 세액계산

11. 신고서

회면도움말

5,795,000

특별세 0

0

0

0

0

0

0

0

0

0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 원)

누진소득비율

클릭! →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결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쇄하실 분은 【인쇄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하단에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홈택스 신고요령

메뉴펼침 메뉴펼기 한***님 | 300118-*****

제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미리보기

11. 신고서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과세연월	2018년1월	납부(환급)할세액	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295,000	농어촌특별세 분납할세액	0
종합소득세 납부(환급)할 세액	107,700	농어촌특별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0
종합소득세 분납할세액	0	지방소득세 납부(환급)할세액	10,770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 납부할세액	107,700		

※(중요)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하고자 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정기신고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내용만 정상하게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확인)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한 경우에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최종 접수된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신고서 접수완료 후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첫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을 선택하여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클릭! **체크!** → **확인하였습니다.**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납부(환급)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31일입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후, 접수증과 납부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제출목록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19-02-17 ~ 2019-03-19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조회하기 ← **클릭!**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한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건 ▼ 확인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기)	접수여부 (첨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제D	부속서류 제출여부
2018...	종합소...	정..	정..	한중형	300118-*	인터넷...	2019-03...	504-201...	정상(7종)	보기	보기	←	클릭!

1 | 총 1건(1/1)

- 상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하단목록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조회됩니다.
- 납부서 항목에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계산구조

1 퇴직소득금액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 합계액} - \text{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함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 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2 산출세액 계산방법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과 2016년 1월 1일 이후 계산방법에 의한 산출세액에 다음의 연도별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소득세법 부칙 제25조(제12852호, 2014.12.2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12.31. 이전 계산방법	80%	60%	40%	20%
2016.1.1. 이후 계산방법	20%	40%	60%	80%

퇴직소득 산출세액

= ㉔ 종전규정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㉕ 개정규정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구조

3 종전규정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합계액 - 비과세소득				
(-) 정률공제	과세기간 공제율	2011~2015년 40%	2006년~2010년 45%	2002년~2005년 50%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 -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 2012년 이전분	[과세표준(안분) ÷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2013년 이후분	[(과세표준* ÷ 근속연수) × 5 × 세율] ÷ 5 × 근속연수 * 2012년 이전분 과표안분액 제외				
기본세율	과세표준	산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산출세액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전방식(2015년) 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2016년) 산출세액	20%	40%	60%	80%
산출세액 (㉢)	㉠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2018년 기준 40%)				

4 개정규정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합계액 - 비과세소득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	공 제 액			
	8백만원이하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800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천170만원 + (1억원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과세표준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 세율	과세표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산출세액 (①)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중전방식(2015년)산출세액		80%	60%	40%	20%
	개정방식(2016년)산출세액	20%	40%	60%	80%
산출세액 (④)	① ×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2018년 기준 60%)				

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 방법

1 모의계산 프로그램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http://hometax.go.kr>) → 오른쪽 상단 「모의계산」을 클릭 → 「퇴직소득 세액계산」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클릭

2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엑셀) 이용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 왼쪽 상단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 「2018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

* 퇴직일이 2019.1.1.이후인 경우 2019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다운로드

- 현재 퇴직소득 확정신고는 홈택스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세무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를 하여야 함

* 신고서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홈페이지 → 세무서식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사례

김성실씨는 A교회에 1999.01.01. 입사하여 2018.03.31. 퇴사하였으며,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00,000,000원임.

<계산내역>

① 종전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2,880,000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 퇴직소득공제	52,000,000 (정률공제 + 근속연수공제)
정률공제	40,000,000 = 100,000,000 × 40%
근속연수공제	12,000,000 = 400만원 + 80만원(20년 - 10년)
(=) 퇴직소득과세표준	48,000,000

	2012년 이전 근무	2013년 이후 근무	합 계
과세표준 안분	33,600,000 (48,000,000 × 14/20)	14,400,000 (48,000,000 - 33,600,000)	48,000,000
(÷) 근속연수	14년	6년	
(=) 연평균과세표준	2,400,000	2,400,000	
(=) 환산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 5)		12,000,000	
(=) 환산산출세액 (환산과세표준 × 세율)		720,000	
(×) 세율	6%		
(=) 연평균산출세액 (환산산출세액 ÷ 5)	144,000	144,000	
(×) 근속연수	14년	6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2,016,000	864,000	2,880,000

01

02

03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04

05

06

신고서 작성사례

② 개정규정 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2,680,000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 퇴직소득공제	12,000,000	
근속연수공제	12,000,000	= 400만원 + 80만원(20년 - 10년)
(=) 환산급여	52,800,000	= (100,000,000-12,000,000) ÷ 20년 × 12
(-) 환산급여공제	34,880,000	= 8,000,000 + (52,800,000-8,000,000) × 60%
(=) 퇴직소득과세표준	17,920,000	
(×) 세율	15%	
(=) 환산산출세액	1,608,000	
÷ 12 × 근속연수	÷ 12 × 20년	
(=) 퇴직소득산출세액	2,680,000	

③ 차감납부세액 : 2,760,000원

특례적용산출세액*	2,760,000	(①2,880,000 × 40%) + (②2,680,000 × 60%)
-----------	-----------	---

* (2018년 특례적용 산출세액 비율) 종전 : 개정 = 40% : 60%

관리번호 -

(2018년 귀속)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1 기본사항

1 성명	김 성 실	2 주민등록번호	520501-1*****		
3 주 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				
4 신고구분	111 정기간고 120 수정신고 130 경정청구 140 기한후신고	5 전화번호	02-***-****		

2 환급금 계좌번호	6 은행명	7 계좌번호
------------	-------	--------

3 세무대리인	8 성명	9 전화번호	10 대리구분	11 신고
	12 관리번호		13 조장번호	

4 퇴직소득 명세	13 지급처명	15 일사일	17 지급일	19 퇴직급여	20 비교제 퇴직급여	21 과세대상 퇴직급여
	14 사업자등록번호	16 퇴사일	18 근속월수			
	A교회	1999.01.01	2018.03.31	100,000,000		100,000,000
	합 계			100,000,000		100,000,000

5 근속연수계산	22 제외 월수	23 가산 월수	24 중복 월수	25 정산근속 연수	26 2012.12.31.이전 근속연수	27 2013.1.1.이후 근속연수(총-26)
				20	14	6

6 2016~2019년 퇴직소득세액 및 지방소득세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중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계산내용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과세표준 계산	퇴직소득(21)	28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29	12,000,000						
	환산급여 [(28-29) × 12배/정산근속연수]	30	52,800,000						
	환산급여별공제	31	34,880,000						
	퇴직소득과세표준(30-31)	32	17,920,000	33	17,920,000				
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환산산출세액(32 × 세율)	34	1,608,000	35	160,800				
	산출세액(32 × 정산근속연수/12배)	36	2,680,000	37	268,000				
중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금액	금액	금액	금액				
	퇴직소득(21)	38	100,000,000						
	퇴직소득정률공제	39	40,000,000						
	근속연수공제	40	12,000,000						
	퇴직소득과세표준(38-39-40)	41	48,000,000	42	48,000,000				
	세액계산	계산내용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2012.12.31. 이전	2013.1.1. 이후	합계	
		과세표준인분(41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43	33,600,000	14,400,000	48,000,000	33,600,000	14,400,000	48,000,000
		연평균과세표준(43/각근속연수)	44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2,400,000
		환산과세표준(44 × 5배)	45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12,000,000
		환산산출세액(45 × 세율)	46	720,000	720,000	720,000	72,000	72,000	72,000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46 × 세율, 13.1.1.이후: 46/5배)		47	144,000	144,000	288,000	14,400	14,400	28,800	
산출세액(43 × 각 근속연수)	48	2,016,000	864,000	2,880,000	201,600	86,400	288,000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49	2018		50	2018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41 × 퇴직연도별 비율) + [44 × (100%-퇴직연도별 비율)]	51	2,760,000		52	276,000			
	가산세	53			54				
	가납부 세액	55			56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51+53-55)	57	2,760,000		58				
	분납할 세액(2월내)	59			60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51-59)	61	2,760,000		62	276,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및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 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신고인 김 성 실(서명 또는 인)

점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01
02
03 퇴직소득세 신고방법
04
05
06

제4장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Tip 종교단체의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요약 및 특례

- ①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시 해당 소득세를 원천징수
- ②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도 선택하여 원천징수 가능
- ③ 종교인소득의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④ 종교단체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반기별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은행에 납부
- 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종교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1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종교인의 소득세액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2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를 할 수 있음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의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01

02

03

04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05

06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이행 상황을 신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함
- 2) 종교단체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10일, 7월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
-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없는 경우에도 제출

5 원천징수세액 납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일(원천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종교단체는 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종교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교부하고 소득을 지급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1) 반기별 납부 제도란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신청에 의해 반기별(6개월마다)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제도

2) 신청요건 및 기간·방법

• 신청요건

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근무 인원수(직전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에 관계없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종교단체는 반기별납부를 적용하고자 하는 전월에 신청

신청기간	귀속시기	원천세 신고·납부
'19년 06월	'19년 7월부터 12월까지	'20년 1월 10일까지
'19년 12월	'20년 1월부터 6월까지	'20년 7월 10일까지

• 신청방법

신청 방법	전자신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세무서식]에서 서식 내려 받기)

1 연말정산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매월 또는 반기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종교인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 제도

2 연말정산 시기

1) 일반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
- 예를 들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 원천징수한 종교인소득에 대해 2019년 2월까지 연말정산 실시

2) 예외(종교인이 퇴직한 경우)

- 종교인이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1) 종교단체가 제출할 서류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연말정산하려는 경우에는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홈택스를 통한 제출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검색
→ 인터넷신청

Tip 연말정산 포기 시 유의사항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일반 행정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

예를 들어, 2019년 부터 종교인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단체는 2019.12.31.까지 「종교인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2) 종교인이 제출할 서류

- 종교인은 연말정산을 위해 종교인소득 공제대상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및 증빙 서류 등을 종교단체에 제출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항목 ■

구 분	공 제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소득공제	기부금(이월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외국납부세액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종교단체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종교인에게 지급한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 이 경우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상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소득자별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를 갖추어 기록한 것으로 봄

5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 1)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명세를 연 1회(다음연도 3.10.)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서류임
- 2) 종교인소득에 대한 소득의 종류(기타·사업소득)와 연말정산 이행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음에 유의

구 분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서식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3)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는 신고대상
 - 종교단체의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종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 종교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종교단체가 공적으로 지출·관리하는 경우 제출대상 아님

6 지급명세서 제출 시 혜택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음

- '19년부터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 등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봄

이 경우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종사 직원의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여야 함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

종교단체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종교인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율

- 1)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다음에서 조회가 가능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3) 반기별 납부자도 종교인에게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시 6개월분을 합산하여 납부
- 4)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세율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연말정산 시 계산한 결정세액에서 매월·반기별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신청

01

02

03

04 |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05

06

3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이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봄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반기)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제출
- 종교단체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의 경우 1월 10일, 7월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3) 연말정산(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소득자별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말정산할 때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을 적용

4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종교단체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결정세액으로 함

-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에 따른 공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세액공제 등 결정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가산세액 제외)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함. 다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환급

5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 1) 종교단체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제출
- 2) 기부금 세액공제금액과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 1)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 2) 다만, 현실적인 퇴직 이후라도 종교인이 그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2 퇴직소득 수입시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함

3 퇴직소득금액

$$\text{퇴직소득금액} = \text{퇴직소득 합계액} - \text{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소득의 합계액으로 하며 아래의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애·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4 퇴직소득 세율

퇴직소득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기본세율을 적용

과 세 표 준	산 식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5% -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과세표준금액의 42% - 3,540만원

5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 1)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2) 다만, 종교단체가 퇴직한 종교인에게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지급시기 의제	종교단체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	종교인이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 12월31일까지 미지급
다음 해 2월 말일	종교인이 12월에 퇴직,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미지급

6 퇴직소득세 납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7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종교단체는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

8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 1) 종교단체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2) 종교단체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

제5장

근로·자녀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장려금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고방식에 관계없이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 28)

* 종교인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19년('18년 귀속분)부터 신청 가능

2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

* 소득, 재산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소득요건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단독 가구 ¹⁾	2,000만원	3~150만원
재산요건	홀벌이 가구 ²⁾	3,000만원	3~260만원
	맞벌이 가구 ³⁾	3,600만원	3~300만원
재산요건	1) 홀벌이·맞벌이 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구		
	2)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재산요건	3) 맞벌이 가구 : 배우자가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근로소득(총급여액),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조특법시행령 제100조의3)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20%~90%)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3 자녀장려세제(CTC)

1)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 등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2) 가구원, 소득, 재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수급요건	세 부 내 용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을 것		
소득요건	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②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종교인 소득의 합계)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지급액 (자녀1인당)
	홀벌이 가구	4,000만원	50~70만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근로장려세제와 동일			
재산요건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이내에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종교인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18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5월) 신청 가능

'19년 귀속분은 반기(상반기분 8월, 하반기분은 다음해 2월) 신청이 가능
(반기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년 5월 정기신청 가능)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18년 귀속분에 대해 정기(5월) 신청 가능

'19년 귀속분은 반기신청*이 불가능함('20년 5월에 정기신청)

*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 반기신청 가능

2) '18년 귀속분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19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19.6.1.~12.2.)

3) 신청방법

전자신청*과 서면신청** 방법이 있으며 전자신청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

* 전자신청 : 국세청 홈택스, ARS,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

** 서면신청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4월말~5월초 세무서에서 우편발송)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청(홈택스 간편신청, ARS, 모바일) 가능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청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면 신청(ARS, 모바일 신청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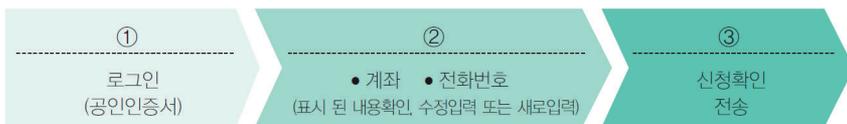
Tip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격 확인 가능

장려금 신청 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모바일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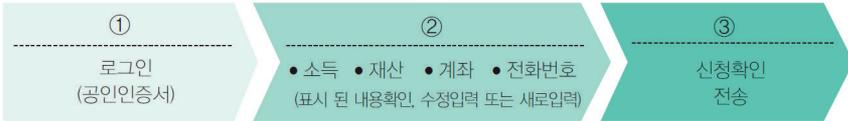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 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대상 여부 확인
- **모바일**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에 접속 → (메인화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대상 여부 확인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 홈택스 신청(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2.2.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홈택스 신청(일반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이용기간 : 5.1~12.2. 이용시간 : 매일 06시~24시)



*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공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만으로 신청가능

• ARS 신청(이용시간 06~24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합니다.

* 평일 09시 이전이나 18시 이후 또는 휴일에 이용하면 신속한 신청이 가능

• 모바일 신청(이용시간 06~24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부여받은 경우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신청



5) '19년 반기소득분(근로소득)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 받으려는 거주자는 '19년 상반기분 급여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8.21.~9.10, 하반기분 급여에 대해서는 2.21.~3.10.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세부 신청방법은 정기분 신청방법과 동일)

5 장려금 지급 및 총당·감액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장려금을 결정하며,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별 신청) 상반기 신청분(8월)은 12월 지급, 하반기 신청분(다음연도 2월)은 6월 지급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제외 되거나 지급액이 변경(감액·증액) 될 수 있음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결정된 장려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하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배우자 포함)가 소득세 신고 시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차감됨
- 장려금 지급액 감액 유형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
기한 후 신청	장려금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을 환수하며 향후 지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제한

제6장

종교인과세 질의·응답 (Q & A) 사례



1 과세대상 소득

Question	Answer
Q1. 종교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한정
Q2. 소속된 종교단체 이외의 타 종교단체에서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 다만,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 받은 소득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Q3. 종교단체가 아닌 교인들로부터 종교인인 사례비를 받은 경우 과세 방법은?	
Q4. 교인들에게 월 3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 (주1회 반주자, 방송실 관계자 등)에 대한 지급액이 과세 대상인지?	
Q5.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가 신도들에게 받는 기부금(현금 및 시주 등)은 세금이 과세되는지?	현금, 시주 등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단체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Q6. 신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할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되는지?	- 다만, 종교인이 직접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함
Q7. 사찰의 보시함에 명목을 기재하지 않고 놓고 가는 시주금이나 상담 후 놓고 가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 단, 종교단체에 귀속된 후 종교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된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8. 개척교회, 말사 등 소규모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의 가족이 종교단체의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Q9. 총회에서 개척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과세 대상인지?	
Q10. 교회 목사의 부인이 직함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으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 부인이 종교인에 해당하면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며, 종교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기타소득·근로소득 등)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

01

02

03

04

05

06

종교인과세 질의·응답(Q&A) 사례

Question	Answer
Q11.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종교단체에 별도로 지급한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종교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종교단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2. 종교인에게 지급한 김장지원금, 이사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금도 과세대상인지?	
Q13.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종교 단체의 특정 행사일에 일시적으로 근무한 경우, 일화성 수수료 성격의 지급액도 원천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일반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 소득(예 : 사례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으로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함
Q14. 신학대 교수의 경우 의무적으로 특정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협동목사를 겸하게 되는데, 신학대 교수인 협동목사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는 경우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소득인 경우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Q15. 종교인과세가 2년간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사실인지?	'18.1월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중임 - 제도시행 첫 2년간 종교인과세가 시범 시행 되기 때문에 엄격히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년 유예된 것 뿐임
Q16. 소속 교회가 없는 목사에게 특별한 설교나 강의활동 없이 국내선교비(복리후생 및 선교활동비)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이것을 종교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종교인소득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 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종교인 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
Q17. 기부받은 금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지 않고 현금으로만 연명하는 교회 등의 경우 과세소득이 전혀 없는게 맞는지?	종교단체가 기부받은 금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다만, 종교인이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킨 후 기부금영수증을 종교단체 명의로 발급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함

Question	Answer
Q18. 휴대폰요금 등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금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종교단체가 휴대폰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면서 요금을 종교단체 회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19.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노트북을 제공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종교단체가 노트북, 참고도서 등을 구입하여 종교단체의 자산으로 등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무관함
Q20. 목회를 위한 참고도서 구입을 위하여 성직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도서구입비에 대하여도 과세가 되는지?	
Q21. 학교 등으로부터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 금액을 종교단체로부터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 문제가 없는지?	전액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전액이 종교인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고, 일부 장학금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종교 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일부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함

01

02

03

04

05

06

종교인 과세 질문 · 답변(Q & A) 사례

2 비과세 소득

Question	Answer
<p>Q22. 교회에서 목회자의 자녀 교육비 등을 교회 회계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한 경우,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로 분류가 가능한지?</p>	<p>자녀교육비, 사회보험료(개인 부담분) 등 종교인 개인에게 처분권이 위임되어 귀속되는 경우에는 종교활동비로 분류할 수 없음</p>
<p>Q23. 종교단체 의결을 통해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자녀학자금 등을 종교단체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종교인소득에서 제외해도 되는지?</p>	<p>종교활동비 비과세 요건</p> <p>㉠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함</p>
<p>Q24.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p>	<p>종교활동비의 정의, 결정, 사용처, 관리, 증빙 등에 관한 기준을 교회(종교단체)의 정관이나 재정규칙 등에서 정하여야 한다는 뜻임 - 또한, 그러한 정관이나 재정규칙은 반드시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에서 승인을 받아야 함</p>
<p>Q25.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p>	<p>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①본인학자금, ②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 이내), ③실비 변상적 성질의 지급액(종교활동비 포함), ④월 1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비, ⑤사택제공이익이 있음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p>
<p>Q26. 비과세되는 본인학자금의 한도액은?</p>	<p>실제로 납부하는 수업료 등을 한도로 함</p>

Question	Answer
Q27. 종교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 하는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은 종교인 본인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말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Q28. 소속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제공하는 식사 등은 비과세 소득인지?	종교인에게 소속 종교단체가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Q29.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식비로 매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경우 얼마까지가 비과세 소득인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을 식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소득임
Q30. 종교인이 사용한 출장비, 여비는 아무런 제한 없이 모두 비과세소득인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만 비과세됨 - 어느 정도가 실비변상적인지는 사회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절차, 즉 종교단체 내부 규정이나 절차에 따름
Q31. 출산·보육비 비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교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 대상임 - 해당 과세기간 중 만 6세를 초과해도 그 과세기간 말일 까지는 비과세함 - 자녀의 수와는 상관없음(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이든 2명 이상이든 월 10만원만 비과세함)

Question	Answer
<p>Q32. 개척교회는 목사의 자가용을 교회관련 업무에 사용하고 유류비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데, 월 20만원 까지만 비과세에 해당하는지?</p>	<p>종교인 명의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해당 종교단체의 규칙 등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을 교회의 명의로 등록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류비 등 지출액은 종교인소득과 무관한 종교단체 회계에 해당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자기차량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비과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 ㉡ 종교활동에 이용 ㉢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 종교단체의 규칙 등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div>
<p>Q33.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종교단체에서 지출한 사택관리 비용도 비과세 되는지?</p>	<p>종교인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만 비과세 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사택은 종교단체가 소유한 것으로서 종교인에게 무상 또는 자기로 제공하는 주택이나, 종교단체가 직접 임차한 것으로 종교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함
<p>Q34. 종교인 명의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보조받거나, 보증금을 지원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사택제공이익에 해당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인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차료를 종교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종교단체 내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임
<p>Q35. A교회는 담임목사의 원룸 임차료를 대신 지급하고 있음(월 70만원, 담임목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소속 종교단체 규약에 숙소 임차료를 교회에서 지급한다고 명시) 이는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 규정하는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울러, 사택에 거주하는 종교인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종교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임

Question	Answer
<p>Q36. 종교활동비 인정 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지?</p>	<p>「소득세법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인정 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p>
<p>Q37. 종교활동비 및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그 범위와 근거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p>	<p>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및 물품을 의미함. 기타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도 법령에 지출한도는 요건 등을 열거하고 있음</p>

01

02

03

04

05

06
종교인과세 질의·답변(Q&A) 사례

3 종교단체

Question	Answer
Q38. 종교인소득 과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종교 단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를 말함
Q39. 소득세법상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회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서 그 소속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해당함
Q40. 종단(교단)에서 고유번호증을 법인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데, 개인으로 보는 단체(***-89-*****)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82-*****)의 차이가 있는지?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으나, 지출경비 구분 및 관리(단체명의 신용 카드 및 통장) 등의 측면에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음
Q41.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정정하여야 하는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경우 개인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데, 종교인소득 과세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구분기장/장부작성

Question	Answer
Q42.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소득 회계를 구분 기장하여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종교단체의 지출 중 ①종교단체 고유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과 ②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 즉,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장부(통장)와 종교단체 고유의 종교활동 비용에 대한 장부(통장)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라는 의미임
Q43. 종교단체 구분 기장이 세법상의 의무사항인지(미이행시 제재 등)?	미이행시 제재는 없으나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분 기장하는 것이 편리함
Q44. 종교단체 구분 기장과 관련하여 종교인 명의로와 종교단체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종교단체 회계를 구분·관리 하는데 효율적임 - 종교단체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가운데가 82)을 부여받으면 종교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음
Q45. 미자립교회나 말사 등의 소규모 종교단체의 경우 장부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종교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종교인회계) 등과 그 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종교단체회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함
Q46. 지출증빙자료를 비치·보관하라고 하는데 사찰의 경우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제재는 없지만, - 법정 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없는 농·어민과의 직거래 등은 계좌 이체를 통해 관련 증빙을 보관하거나, 3만원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는 간이 영수증을 수취하고 장부에 기록·관리하면 됨

01

02

03

04

05

06

종교인과세 질의·답변(Q & A) 사례

5 종합소득세

Question	Answer
Q47. 종교인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 신고해야 하는 소득의 종류는?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계없이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48.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종교인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2개 이상의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3.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이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이자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경우
Q49. 미자립교회의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데도, 신고의무가 있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의무는 없음
Q50. A교회에 갑, 을, 병 3명의 종교인이 있을 경우, 갑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을은 종교인소득으로 연말정산, 병은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각각 선택할 수 있는지?	같은 종교단체에서도 종교인별로 각각 달리 선택할 수 있음
Q51.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종교인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하는 것인지, 종교인소득으로 확정신고하는 것인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 가능

Question	Answer
Q52. 종교인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한 경우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지?	과세표준 계산과 각종 공제항목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경우가 동일함
Q53.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나 종교단체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만을 하여야 하는지?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Q54. 종교단체가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선택하고, 연간 소득 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
Q55.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매월 또는 매년 변경할 수 있는지?	소득의 선택은 과세기간 단위로 변경할 수 있음
Q56.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당초 원천징수 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Q57.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율이 다르고, 공제항목도 달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6 필요경비

Question	Answer
<p>Q58.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이 2019.1.1. 지급분부터 70% ⇒ 60%로 변경되는데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율도 변경되는지?</p>	<p>변경되는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으로 종교인소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p> <p>-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당초와 같이 지급받는 금액에 따라 20~80%의 필요경비율이 적용됨</p>
<p>Q59. 교회가 같은 교단 소속의 다른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에게 해당 교회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전이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필요경비 적용 방법</p>	<p>종교인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 따라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이 소속되지 아니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에 따라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p>

7

공제항목

Question	Answer									
Q60. 종교인소득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가능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Q61. 종교인소득의 소득공제 항목 중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적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공제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적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되나,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음									
Q62.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음									
Q63.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의 차이가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통으로 인정</th> <th>근로소득만 추가인정</th> </tr> </thead> <tbody> <tr> <td>소득 공제</td> <td>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td> <td>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간저축액</td> </tr> <tr> <td>세액 공제</td> <td>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td> <td>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td> </tr> </tbody> </table>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간저축액	세액 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구분	공통으로 인정	근로소득만 추가인정								
소득 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 창업투자조합출자공제	특별공제(건강보험료 등), 주택마련저축 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간저축액								
세액 공제	표준공제, 자녀, 기부금, 외국납부, 연금계좌	근로소득, 월세,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 표준세액공제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연 7만원, 근로소득은 연 13만원									
	* 종교인소득은 필요경비(20~80%)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은 (2~70%)를 적용									

8 해외선교사 관련

Question	Answer
<p>Q64. 해외에 있는 선교사에게 국내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지 또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p>	<p>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함. 종교단체가 소속 선교사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해당 선교사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선교사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p>
<p>Q65. 해외파견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선교활동비는 종교활동비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지?</p>	<p>소득세법 시행령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 및 물품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교활동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소득의 성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p>
<p>Q66. 비과세되는 종교활동비 규정을 해외선교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p>	<p>동일하게 적용됨</p>
<p>Q67. 외국 종교단체가 국내에 설립한 종교단체(분원)의 소속 종교인에게 외국 종교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신고 대상인지?</p>	<p>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속된 종교단체의 상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종교인소득은 아니지만 소득의 성격 및 현행규정에 따라 다른 기타소득 항목 등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함</p>

9

퇴직소득

Question	Answer
Q68. 종교인이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도 과세 대상인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과세대상임

10

4대보험

Question	Answer
Q69. 종교인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대상이 되는지?	4대 보험은 해당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세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실무 적용시에는 아래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고용보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1

02

03

04

05

06

종교인과세 질문 · 답변 (Q & A) 사례

2018년 귀속 종교인소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발행일자	2019년 4월
발행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집필·편집	소득세과장 이응봉 행정사무관 박옥임 국세조사관 신지명 국세조사관 임민철

* 본 책자를 복사하거나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의 내용은 2019.4월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이 책의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세법과 예규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